

금강어학원 규정

제 정 : 2003. 9. 1.
개 정 : 2016. 12. 1.
개 정 : 2018. 5. 21.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이 규정은 학칙 제4조에 의거하여 설치한 금강대학교 부설 금강어학원(이하 “어학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목적) 어학원은 언어교육을 통하여 재학생의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교육 프로그램,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 강좌 등을 운영함으로써 금강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어학원은 금강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어학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외국인 등을 위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강좌 운영
2. 재학생 및 일반인을 위한 언어특강 운영
3. 외부 관련기관과의 언어교육 협력
4. 기업체 위탁교육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5. 기타 운영위원회가 어학원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한 사업

제2장 구 성

제5조(원장) ① 어학원에는 원장을 두며,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어학원을 대표하여 어학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교원 및 연구원 등) ① 어학원에는 교원 및 연구원을 두며, 제반 연구 및 교육,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② 제1항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약간명의 조교 또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어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구성) 위원회는 원장, 교학지원처장, 기획관리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원장은 위원장이 된다.

제9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어학원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어학원 교원 및 연구원, 조교의 임면 추천에 관한 사항
3. 어학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어학원 운영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교원 및 연구원, 조교, 및 시간강사

제11조(교원 및 연구원) ① 어학원에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교원 및 연구원의 매 학년도 정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교원 및 연구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④ 교원 및 연구원은 해당 언어를 전공한 박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⑤ 연구원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2조(교원 및 연구원의 처우) 교원 및 연구원의 처우는 본 대학교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교원 및 연구원의 책임강의 시수) 교원의 책임강의 시수는 본 대학교의 해당 규정에 따르고, 연구원의 책임강의 시수는 주당 15시간으로 하며, 미달 또는 초과될 경우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조(조교) 조교는 조교임용규정에 따른다.

제15조(시간강사) ① 언어 교육, 한국어 및 한국문화강좌 운영 등을 위하여 시간강사를 둘 수 있다.

② 시간강사의 자격은 관련 언어 및 언어 교육과 관련된 학문적 지식과 경력이 있는 자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③ 시간강사는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그 처우에 관한 사항은 학기 초에 절차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재 정

제16조(회계) 삭제

제6장 보 칙

제17조(규정변경) 삭제

제18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개정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